

의안번호	2202431
의 퇴 인	한병도의원
회 답 일	2024. 10. 2.
추계번호	24D246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의 재정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수입은 2025년 7,277억원 등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 총 4조 3,662억원(연평균 7,277억원)이 증가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의 재정 특례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30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안 제116조의3 신설 (지방교부세 특례)	7,277	7,277	7,277	7,277	7,277	7,277	43,662	7,277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7호 신설)	재량규정
2	안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신설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의 육성과 농생명산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1항),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항)	재량규정
3	안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신설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 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

4	안 제66조의3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신설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5	안 제116조의2 (인건비성 예산 총액 특례) 신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16조의3 (지방교부세 특 례)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30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 ¹⁾ 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제2항 ²⁾ 에 따라 건전재정운동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항목 및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정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16조의5 (특례의 존속기 한 등) 신설	-안 제116조의4의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짐(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 2)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건전재정운동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2(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에 대한 지원 범위 및 규모 등을 추정하기가 곤란함
2	안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신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규모,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추정하기가 어렵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3	안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신설	×	-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가 곤란함
4	안 제66조의3(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신설	×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 규모를 추정하기가 곤란함
5	안 제116조의2(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 신설	×	-개정안에 따라 확대될 인건비 규모를 현시점에서 추정하기가 곤란함
6	안 제116조의3(지방교부세 특례) 신설	○	-
7	안 제116조의5(특례의 존속기한 등) 신설	×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 비용 등을 추정하기가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면적 등 기초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밀하게 이루어지나, 본 추계에서는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조정률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추계함
- 개정안 부칙에서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확정되었고, 개정안에서

는 2030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116조의3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는 경우, 전북 특별자치도의 재정 수입은 증가하고 증가한 금액만큼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감소함
- 개정안의 재정 특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추가적으로 교부할 보통교부세는 연간 7,277억원임
 - 본 추계에서는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조정률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추계함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에 교부된 보통교부세를 보면, 기준재정수요액은 2조 7,195억원, 기준재정수입액은 1조 2,625억원이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은 1조 4,570억원이며 조정률은 75%으로, 1조 935억원이 교부되었음

[표 2]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기준재정 수요액	기준재정 수입액	재정부족액	조정률	교부액
보통교부세	27,195	12,625	14,570	75%	10,935

자료: 행정안전부

-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재정부족액)에 125%를 곱하면 개정안에 따른 보통교부세이며, 그 금액에서 현행 보통교부세(=재정부족액×조정률)을 제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수입 증가분을 산출하면 연간 7,277억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증가분

(단위: 억원)

자치단체명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부족액 (C=A-B)	재정수입 증가 (=C×125% - C×조정율)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27,195	12,625	14,570	7,277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일부 추계) 추계 결과, 개정안의 재정 특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추가적으로 교부할 보통교부세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4조 3,662 억원으로 추계됨

[표 4] 재정 특례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30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통교부세	7,277	7,277	7,277	7,277	7,277	7,277	43,6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